

3.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 .

제 출 자 : 종 로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이 새로이 제정·공포시행(2003. 1. 1)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관계로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문의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개정.(안 제1조)
- 나.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.(안 제3조)

3. 개정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

4. 예산수반사항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5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 “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”로 한다.

제3조(구성)제2항중 “종로구청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 하고, 부구청장이 된다.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(이하 "종로구"라 한다)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구성) ①(생략) ②위원장은 <u>종로구청장</u> 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부구청장</u> 이 된다. ③~④(생략)	제3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부구청장</u> -----, ----- <u>위원</u> <u>중에서 호선한다.</u> ③~④(현행과 같음)